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입법정책정보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 목차

<b>I. 상위법령 제·개정</b>	<b>1</b>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4
<b>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b>	<b>5</b>
○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5
○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6
<b>III. 자치법규 참고정보</b>	<b>7</b>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7

# I 상위법령 제 · 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9호, 2022. 8. 2., 일부개정]

### □ 제 ·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려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831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조합 창립총회의 개최 방법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의 요건(제3조제1항제4호)

- 1) 종전에는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만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는바,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일부가 반경 350미터 밖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경 350미터 밖의 지역은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2) 앞으로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면적의 과반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바깥에 있는 면적까지 포함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지원함.

나. 조합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함.

2)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정관의 확정, 임원 및 대의원 선임 등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창립총회 의사결정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

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절차(제21조의4 신설)

- 1) 시장 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4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 2) 시장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조합에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를 보내도록 함.

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유형 등(제21조의5 신설)

-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등의 다음 날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함.
- 2) 조합설립인가가 고시되었더라도 ‘농림수산물의 직접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함.

마.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요건(제22조제1항 신설)

현행 규정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바, 앞으로는 주택 양도자가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수했다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던 주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지원함.

바.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檢印) 방법(제22조의2 신설)

-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등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서면동의서 양식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및 ‘사업비의 분담기준’ 등 동의자의 확인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하도록 함.

2) 시장 등은 서면동의서 양식에 동의자 확인사항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서면동의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을 하도록 함.

사. 속기록 등을 보관해야 하는 회의의 범위(제44조의2 신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등에서 ‘조합이 체결하는 용역 계약’,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영상기록 등을 만들어 조합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조례관련 참고사항]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2호, 2022. 6. 22., 일부개정]

## □ 제 · 개정이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업무를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 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 주요내용

(제19조의2제6항)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19조의2(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

###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2. 7. 19.] [경기도조례 제7457호, 2022. 7. 19., 제정]

#### □ 제정이유

- 유기동물을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청소년(이하 ‘홀로 사는 노인 등’ 이라 함)에게 입양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정한 지원이 필요함
-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반려동물 돌보미가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안부 확인 및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 주요내용

- 가. 홀로 사는 노인, 장애청소년, 반려동물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함(안 제6조)
- 마.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시행 2022. 9. 22.] [경상북도조례 제4725호, 2022. 9. 22., 제정]

## □ 제정이유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살리기운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하천을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관리·보전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하천살리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으로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제3조)
- 나. 하천살리기운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제4조)
- 다.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사업으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 및 감시활동,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 및 발전사업 등으로 명시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제5조)
-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제6조)
- 마.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내 시·군 하천살리기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안 제7조)
- 바. 포상에 관한 규정(제8조)
- 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9조)

###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 상수원 보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관련) (안전번호의견 22-0215 요청기관전라북도 정읍시)

#### □ 주요내용

##### [의뢰내용]

가. 상수원 보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나.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돗물평가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라 함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이 사안과 관련하여 상수원 보호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수도법」 제7조제1항에서는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여 상수원 보호에 관한

사업 수행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원 보호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귀 시에서는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인 상수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문기관인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이하 “정읍시식수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서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읍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등 수돗물 검사·점검이 주된 내용이며,

신설하려는 정읍시식수원위원회는 민관합동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에 있어 상수원 보호가 주된 기능이므로 성격과 기능면에서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각각 별도의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만,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취지라면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현행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내용을 이관해 규정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신설되는 정읍시식수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례입안시 참고하기 바람.

[자료출처: 법제처]